「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업무계획

2006. 8

기획예산처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본 자료는 기획단 업무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Ⅰ. 기획단 설립 배경 ····· 1

Ⅰ-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황 ····· 1

Ⅰ-2. 기획단 설립 추진경위 ····· 4

Ⅱ. 기획단의 임무 및 추진전략 ····· 6

Ⅱ-1. 기본임무 ····· 6

Ⅱ-2. 추진전략 ····· 8

Ⅲ. 기획단이 추진할 업무 ····· 11

Ⅲ-1. '06년도 추진업무 ····· 11

Ⅲ-2. '07년도 추진업무 ····· 14

Ⅳ. 관련기관과의 업무 추진체계 ····· 18

Ⅳ-1. 업무 추진체계 개요 ····· 18

Ⅳ-2. 참여 기관별 세부역할 ····· 19

Ⅴ. 기대 효과 ····· 23

Ⅰ. 기획단 설립 배경

Ⅰ-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황

□ 사회·경제적 여건

○ **(서비스 욕구 증가)**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출산율 저하로 생산인구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진행 중
- 과거 가정에서 해결하던 보육과 간병 등 문제가 사회문제화

○ **(복지시스템 미비)**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복지시스템 전반이 미흡

- 공적 사회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공적사회지출비중(대GDP, '01년) : OECD 평균 20.9%, 한국 6.1%

- 내용상으로도 서비스 제공보다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

○ **(일자리 창출 둔화)**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로는 적정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제조업 주도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IT 등 노동절약적 기술발전으로 고용흡수 능력 저하
- 그 결과 음식·숙박업, 개인화물 운송업 등 자영업 과다

□ 그간의 사회서비스 확충 노력

○ **(일자리 창출 논의 개시)** '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논의 시작

-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일자리' 논의

○ **(사회적 일자리 본격 논의)** 참여정부 들어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

- '03년 하반기 추경으로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 최초 시행
- 이후 사업시행 부처와 사업규모 지속 확대

* 사회적 일자리사업 규모 : ('03) 1개 부처 73억원 → ('06) 8개 부처 3,039억원

□ 사회서비스 공급 부진의 요인

○ **(저조한 공적 지출)** 산업정책 위주의 투자로 상대적으로 공적 사회지출 저조

- 소득 1.7만불 시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한국 6.1%('01), EU 24%('90), 미국 15%('76) 일본 12%('87년)

* 공적 사회지출 : 정부 지출(중앙, 지방) + 사회보험 급여(연금·의료·산재·고용보험)

- 사회서비스는 외부효과(externality)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과소 공급될 가능성 →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

○ **(제도 확충 노력 미흡)**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제도 확충 노력이 미흡

- 서비스 관련정책이 읍면동에 집중되는 반면, 주민서비스 인력은 크게 부족
- 시장가격 등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약
- 자격제도 미비, NGO 등 제3섹터 미성숙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부족

○ **(사회보험 등의 한계)** 사회보험 등을 통한 적극적 수요창출 노력이 부족

-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의 낮은 수혜율로 노인·실업자의 사회서비스 구매력 부족

* 국민연금 수혜율(65세이상 노인) : 13.5%

<참고 1>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체계

사회·경제 여 건	▪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 사회서비스 욕구 분출	▪ 성장율 둔화 ▪ 고용없는 성장 ▪ 소득분배구조 악화
	⇩	⇩
문 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미비 전 소득계층에 대해 수요 충족이 미흡	자영업자 과다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	
대 응	양질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	
정책수단	서비스 수요측면	서비스 공급측면
	상위계층 → 고급수요 충족 (규제 완화 등)	재정지원 효율화·확대
	중간계층 → 구매력 보전 (사회보험 등)	자격제도 정비, 직업교육·훈련 등
	빈곤계층 → 기본수요 보장	정부·민간·제3섹터간 역할 정립

Ⅰ-2. 기획단 설립 추진경위

□ 대통령님께서 4월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보고시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획단 설치 지시(4.26)

< 대통령님 말씀 >

○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획단'을 만들 것인가,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기획단'을 만들 것인가 검토(사회정책수석실에 지시)

○ 기획단이 할 일

- 사회서비스사업 발굴, 각 부처 사업 조정 및 재원 마련
- 사회서비스 성공모델의 발굴·공유·확산
- 사회서비스 부문별 추진성과 점검·평가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 청와대(사회정책수석실),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구성 요청(5.2)

○ 기획예산처, 기획단 설치안을 마련하여 청와대 보고(5.15)

-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 주재 기획단 설치 회의(5.19)

□ 이후 기획예산처의 추진경과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174호)」제정(6.20)

- 부처협의(5.25~6.1) → 법제처 심사(6.15) → 대통령 재가(6.16)

○ 정원 협의(행자부·인사위, 5.25~6.20)

- 파견규모 : 정원 22명(별도 13, 이체 2, 비별도 7)

○ 단장 임명(6.28) 및 기획처 준비요원 지원발령(7.3)

○ 기획단 운영예비비(20.8억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7.18)

○ 준비요원 사무실 입주(7.20) 및 개단식 행사 개최(7.27)

<참고 2>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조직도

단 장
(기획처, 고위공무원)

자문위원회

기획총괄팀	사업개발1팀	사업개발2팀	제도기반팀
팀장 : 기획처 3·4급	팀장 : 복지부 4급	팀장 : 노동부 4급	팀장 : 행자부 4급
▪ 기획처 4·5급 ▪ 기획처 5급 ▪ 재경부 5급 ▪ 교육부 5급 ▪ 기획처 6급	▪ 문광부 4·5급 ▪ 복지부 5급 ▪ 여성부 5급 ▪ 노동부 5급	▪ 노동부 5급 ▪ 교육부 5급 ▪ 복지부 5급 ▪ 병무청 5급	▪ 행자부 5급 ▪ 복지부 5급 ▪ 노동부 5급 ▪ 청소년위 5급
▪ 사회서비스 향상 정책 총괄 ▪ 사회서비스 수요 조사 및 분석 ▪ 부처간 사업 종합 연계·조정 ▪ 사회서비스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 사회서비스사업 점검·평가 ▪ 자문단 운영 ▪ 우수사례 발굴·확산 ▪ 홍보·대외협력 ▪ 전산운영 등	▪ 보건복지·의료·문화·여성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 보건복지·의료·문화·여성 분야 제도개선 ▪ 보건복지·의료·문화·여성분야 정책 현안 ▪ 박물관 등 공공시설 서비스향상 ▪ 기타 보건복지·의료·문화·여성분야 사회서비스 향상 사업	▪ 노동·교육·환경·청소년분야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 노동·교육·환경·청소년 분야 제도 개선 ▪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 방과후 활동 ▪ 사회복무제도 ▪ 기타 노동·교육·환경·청소년분야 사회서비스 향상사업	▪ 사회서비스 공급 향상 기반구축 ▪ 정부·지자체 추진체계 정비 ▪ NGO 등 민간기구와의 네트워킹 ▪ 자원봉사제도 (volunteer) 활성화 ▪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회서비스향상 사업

* 기획단은 총 40명 내외로 운영 : 공무원 22명(기획처 5명, 부처파견 17명) 민간·전문계약직(In-house Think tank) 8명, 사무보조 5명 등

Ⅱ. 기획단의 임무 및 추진전략

Ⅱ-1. 기본임무

◇ 대통령님의 핵심 프로젝트인 사회서비스 향상 업무를 혁신하고, 지적·인적 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 부처 공동작업으로 개발·정비된 업무성과를 자기부처로 가져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

◇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서비스기관 관계자를 모아 지식과 노하우, 정책방향과 과제를 공유·축적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 **(성과평가·재원확보)**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전략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 조정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모델 공유·확산

○ 각 부처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재원 확보

□ **(수요 조사·분석)**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밀 수요분석을 토대로 주요 공급부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급 확대계획 수립

○ 간병서비스, 방과 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시설 활용 등

□ **(제도 정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 기업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NGO·자원봉사자 등 민간역량 활용, 사회보험제도 정비, 자격제도 정비, 직업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Ⅱ-2. 추진 전략

1.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전략

□ 제한된 기한('07년말) 동안에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계획에 따른 치밀한 실천전략** 필요

① 소량·다품종 성격인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적 욕구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부문을 핵심 전략 서비스로 선정하고, 전략서비스 확충에 역량 집중

② 최대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집행 프로그램 위주로 대책 마련

□ **대통령 지시사항**,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 금년에는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이미 도출된 정책과제부터 우선 검토 착수하여 개선방안 모색

* 개별 서비스별 공급 확대방안(간병도우미 서비스 등)
*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사회적 기업제도 발전방안 등)

2. 관계부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업무수행

□ 정책의 모든 이해 당사자(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서비스 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작업 추진**

○ 사회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know-how)를 공유·확산

○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업무 이해도 및 업무수행 능력제고

□ 기획단은 2가지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① 정책 인큐베이터 기능

- 기획단과 각 부처는 부처가 자기업무를 기획단에 가져와, 공동으로 개념·전략·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후 다시 자기 부처로 가져가 집행하는 관계
- 연구기관도 연구 과제를 가져가서 연구 계속

② 인재 인큐베이터 기능

- 학계·연구원·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여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적 자본을 축적하는 역할 수행

⇒ 사회서비스 정책의 지속 추진 기반 조성

- 특히, 서비스 전달기관인 자치단체·시민단체는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mind 및 능력을 함양

3.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 공급이 명백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업에 착수하되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추진

○ 노인 수발보험, 장애인 도우미, 도서관·박물관 개장시간 연장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에 바로 착수

○ 국내 수요정밀 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공급확대 필요 직종을 개발

□ 사회서비스 **산업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수립** 추진

○ 산업분석 전문가(In-house Think-tank) 채용 검토

4.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평가시스템 구축

□ 국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발굴·지원을 위해 총액예산 성격의 사업 신설방안 검토

예) 행자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31대 로드맵사업 지원)

□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점검·평가 체계 구축

○ 점검평가단 구성 : 학계, 연구원, NGO 등의 전문가

○ 점검·평가 기준

① 서비스 전달체계(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근거,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증진 가능성 등

② 일자리 창출 효과(근로자) : 고용 창출효과, 고용지속성, 고용만족도 등

③ 사업성과(수혜자) : 수혜자 만족도

5. 검증된 우수사례(Best Practice) 중심의 전국 확산

□ 우수사례 중심의 전국 확산 추진

○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범사업** → 전국 확산·보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은 의지와 역량을 가진 지자체를 선정·실시하여 성공 후 Best Practice를 전국에 확산

○ 사업개발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뛰어넘는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도 검토

- 공사 또는 공단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인력 채용방식도 검토

□ 재정투자 확대와 사업주체의 준비태세 확립

○ 성공사업이 발굴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투자확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자체, 시민단체도 1년 반 동안 사업 준비를 해서 재정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사업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6. 기획단 업무의 대통령 보고 및 업무협의

□ 기획단 업무는 정기적으로 대통령님께 보고

□ 기획단장은 매월 사회부처 1급 회의에 참석하고, 2주에 1회 정도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등과 단장급 회동 추진

Ⅲ. 기획단이 추진할 업무

Ⅲ-1. ‘06년도 추진업무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사업 점검・평가(대통령님 지시, 4.26)

○ 추진절차 : 부처 자율평가(7월) → 기획단이 민간 전문가로 점검・평가단을 구성, 점검・평가(8～9월)

*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간 중복 및 연계방안 집중 검토

○ 점검・평가 대상 : ‘03년～’05.12월 기간 중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 점검・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 ‘07예산 및 ’06～‘1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8～12월)
- 대통령 보고(10월 중순경)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검토(8～11월)

○ 발굴방식 : 부처 제출(7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8~11월) 및 기획단 자체 발굴 등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수집

○ 사업화 : ‘07년도 시범사업 실시 → 사업성과 점검평가 후 ’08년부터 전국 확산 검토

- 우수 신규사업 발굴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총액예산 사업 신설방안 등 “신규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 부처협의 거쳐,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07.3)

□ **핵심 전략서비스 공급확대 방안 마련**(대통령님 관심사업)

○ 간병도우미 서비스(간호사 간병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수가 신설 등)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체계화

○ 공공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서비스 확대 등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과제 검토 착수**

* 예시) ① 사회적 기업제도 발전방안
②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방안
④ NGO · 비영리단체 등 민간역량 활용방안
⑤ 사회서비스분야 자격관리제도 개편방안
⑥ 사회서비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편

□ **'07년도 중점검토 대상 세부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우선 추진할 전략 세부서비스(10～15개) 선정

○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사회서비스사업 정책 및 제도의 대국민 홍보 등 추진**

○ 사회서비스사업 주관기관(부처 · 지자체 등)에 대해 새로운 정책 ·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언론 ·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 홍보활동 등 추진

<참고 3>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점검·평가 계획

□ 점검·평가단 구성 : 학계, 연구원, NGO 등의 전문가로 구성(20여명 내외)

□ 점검·평가 기준

① 서비스 전달체계(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근거,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증진 가능성 등

② 일자리 창출 효과(근로자) : 고용 창출효과, 고용지속성, 고용만족도 등

③ 사업성과(수혜자) : 수혜자 만족도

□ 점검·평가 일정 : '06.8.7~10월(잠정)

○ 8.7～8.16 : 부처 사업담당자 면담

< 면담방식 >
· 전체 사업을 7~8개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 그룹에 속하는 사업 담당자 동시 면담 · 1개 그룹당 1일 또는 반나절 집중 면담 · 점검평가단장, 점검평가위원 및 기획단(단장 포함) 관계자 전원 참석

○ 8.16일 이후 : 사업현장 방문·점검

○ 10월중 : 점검평가 완료

□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점검·평가 중간 결과 : 재정운용실에 통보

* '07년도 예산 및 '06~'1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최종 점검·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 대통령 보고(10월중순)

Ⅲ-2. '07년도 추진업무

< 상반기 >

□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점검・평가

○ 추진절차 : 부처 자율평가(12월) → 기획단이 민간 전문가로 점검・평가단을 구성, 점검・평가(1～3월)

○ 점검・평가 대상 : '06년도 사업실적 및 제도정비 실적

○ 점검・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대통령 보고(4월)

□ '06～'07년도 신규 발굴사업 선정・지원

○ 지원대상 : 신규 발굴사업(부처 제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획단 발굴사업) 시범실시 대상 선정

- 부처간・지자체간 상호연계 필요한 사업 중심

○ 지원심의 : 기획단, 예산 주관부처(복지부 또는 노동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 사업화 : 역량과 의사를 가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 성공시 전국 보급・확산 추진

⇒ '신규사업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확정 후 추진

□ 세부 서비스별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 방안 마련

○ 10～15개 세부 서비스별로 작업반(Working party) 구성

* 작업반 구성(안) : 기획단, 소관부처, 학계・연구기관, 서비스 종사기관, 수요자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

- 서비스 관계자간 공동작업,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역할

○ 세부 서비스별 공급 확대 방안 마련(6월)

- 현재 진행중인 핵심사업은 물론 '06～'07년도 발굴된 신규 사업까지 포함

- 서비스별 제도정비 과제 발굴

  · 진입장벽 완화, 규제 정비 등 과제에 대한 기획단 시안을 마련, 공청회·부처협의 등을 통해 방안 확정(5월까지)

- 정부·시장·제3섹터간 역할 정립

○ '08년 지출한도 및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6월)

□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및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 (6월말까지)

○ 사회서비스 수요 조사 및 분석

○ 세부 서비스별 공급목표(대상별, 달성시기 등)

○ 공급주체별 역할 분담

○ 세부 서비스별 제도기반 구축

< 하반기 >

□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재정조달계획 마련

○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재원조달 강구

○ 국가 · 지자체 · 제3섹터 · 자부담간의 역할 분담

○ ’08년도 예산 및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주관기관별 제도개선 추진

○ 종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부처 · 지자체 및 제3섹터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정비와 관행개선 등 추진(12월까지)

○ 기획단 및 기획단 참여부처 중심으로 주관기관의 제도정비 및 관행개선 독려

□ 새로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 형성

○ 사회서비스사업 주관기관(부처 · 지자체 등)에 대해 새로운 정책 ·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

○ 언론 ·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 홍보활동 등 추진

<참고 4> 주요업무별 일정표(안)

	2006년		2007년			
	3/4분기 (7~9월)	4/4분기 (10~12월)	1/4분기 (1~3월)	2/4분기 (4~6월)	3/4분기 (7~9월)	4/4분기 (10~12월)
1.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 부처자율 평가						
▪ 민간평가단 점검·평가						
▪ 점검결과 보고(VIP)						
▪ 예산 및 국가재정운영 계획 반영 등						
2.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검토						
▪ 부처 신규사업 제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사업화 검토						
▪ 시범사업(역량·의사있는 지자체 대상)						
3. 핵심 전략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간병도우미, 방과후활동, 공공시설 서비스 확대 등)						
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과제 검토 착수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민간펀드 조성 등)						
5. '07년도 중점검토대상 과제 도출						
▪ 전략서비스(10~15개) 선정						
▪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6. 세부 서비스별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 방안 마련 (10~15개 세부서비스별)						
7.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및 종합마스터플랜 마련						
8.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재정조달계획 마련						
9. 주관기관별 제도개선 추진						

Ⅳ. 관련기관과의 업무 추진체계

Ⅳ-1. 업무 추진체계 개요

□ 업무 지휘·보고

○ 청와대(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고

□ 관련부처와 공동작업

○ 관련부처는 기획단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

- 각 부처 사회서비스사업은 기획단을 통해 조정·확정 (대통령 보고도 기획단을 통해 일원화)

○ 부처는 기획단에서 조정·확정한 사회서비스사업 집행

□ 지자체, 연구기관, 수요단체, 시민단체 등 참여

○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

○ 기획단 임무 종료 후에도 정책 지속될 수 있는 토대 마련

Ⅳ-2. 참여 기관별 세부 역할

가. 중앙부처

□ 정책기획 단계부터 기획단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정책 개발

○ 기획단에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부처의 관련 공무원이 참여

* 참여부처 : 기획예산처,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부, 청소년위, 행자부, 재경부, 병무청 등 10개 부처

□ 부처는 소관 사회서비스 업무를 기획단에서 공동으로 개발·향상시킨 후 다시 부처로 가져가 추진

○ 부처가 자기 업무를 기획단에 가져와 1년 반 동안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다시 자기 부처로 가져가므로 일종의 '벤처기업 보육센터'와 같은 기능수행

- 범부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동 개념, 공동 전략 및 실현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자기 부처로 가져감

→ 부처는 자기 일을 키워서 추진하는 입장

□ 기존 정책도 기획단과 부처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평가

○ 평가결과는 기존 정책의 확대·축소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환류

□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정책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공론화 절차에 앞서 사전에 기획단과 협의

나. 사람입국 · 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의

○ 특히, 대통령께서 위원회에 지시('06.4)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재정사업 점검 · 평가는 위원회와 기획단이 공동 수행

○ 필요시 기획단 수립 정책방안을 위원회에 상정 · 심의

다.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 사회서비스의 내용(contents)와 전달체계(hard-ware)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되,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조

○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은 국민이 향유해 나갈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

○ 추진단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역단위에서 국민(주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하는 업무를 특화

□ 기획단 내부(제도기반팀)에 연락 포인트를 두고 상호 업무진행 상황을 상시 체크

라. 학계 · 연구기관

□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 학계 · 연구기관에서 활동중인 주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싱크탱크(think-tank)로 활용

○ 특히,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평가단을 구성, 점검결과를 사업 조정 및 신규개발에 반영

○ 해외사례 소개, 기획단과의 동반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정책 개발이 필요한 영역과 방향을 제시

□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재육성 기능 수행

○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과 연구 과제를 만든 후에 가져가 연구를 계속 → 이 분야 지적 자본이 축적

○ 교수 및 연구원 박사들을 참여시켜 아이디어도 받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 기획처 혼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회에 잘 전달되지가 않고, 계속적인 연구 곤란

□ 교수 및 연구원은 사회서비스 사업 성과평가나 기획단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책임자문위원* 으로 활용방안 검토

* 책임자문위원 : 자문위원장이 기획단의 핵심추진과제에 책임 자문하기 위하여 개별 자문위원을 책임자문위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마.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현장은 지역단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지역 우수사례는 전국에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두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검토, 유인방안을 강구

바. 사회서비스 전달기관·단체 및 수요자 단체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실무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실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 자문위원회 참여,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

○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전달기관·단체 및 수요자 대표를 점검·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킴

아. NGO 등 시민단체

□ 자문위원회 참여,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간 네트워킹,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 공동 작업

○ 필요시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강구

Ⅴ. 기대효과

□ **(복지수준 제고)** 공적 부조 및 사회 보험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우리사회 복지수준을 제고

○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는 미발달

○ 사회서비스 수요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공급 확대로 성장 동력의 확충,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 구축

○ 사회서비스 분야는 외국에 비해 아직 미개척 분야로 적절한 사회서비스 창출시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 역할 기대

*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1인당 국민소득 1.8만불기준)
: 한국 12.7('04), 핀란드 26.6('93), 영국 21.2('88), 뉴질랜드 20.5('97)

○ 특히, 간병 등 반숙련·단순노동만으로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자영업자·유휴노동계층의 상당부분 흡수가 가능

-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기능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

□ **(재정효율성 제고)** 향후 크게 증가할 복지관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가

○ 부처별 산발적·단편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 방지

□ **(지식·노하우 공유)** 기획단 공동 작업을 통해 지식과 노하우 등을 축척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 사회서비스 유관기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질을 제고